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인 쇄 2007년 8월 16일

발 행 2007년 8월 1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봄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옥,
서은성.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7-03)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05-4 93340 : 비매품

349.11-KDC4
327.519-DDC21

CIP2007002484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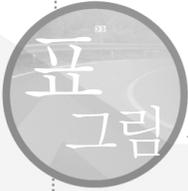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통일연구원



I. 서론	1
II. 국군포로·납북자 실태	5
1. 국군포로 실태	7
2.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실태	9
III.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추진 현황	15
1. 정부의 기본입장	16
2. 북한의 태도	19
3. 남북회담을 통한 근원적 해결 추진	22
IV.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전문가 설문 조사	29
1. 설문개요	30
2. 설문조사 결과	30

V. 해결방안	37
1. 기본원칙	38
2. 세부방안	42
참고문헌	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55



표그림 목차

<표 II-1> 국군포로 현황	7
<표 II-2> 국군포로 생사확인 결과	8
<표 II-3> 국군포로 귀환 내역	9
<표 II-4> 납북 및 억류자 현황	11
<표 II-5>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12
<표 II-6> 귀환 납북자 현황	12
<표 III-1>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확인 및 상봉 현황	18
<표 III-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북회담 전개과정	27



서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장전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유엔 차원에서 ‘강제실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협약이 발효 예정으로 있다.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고향을 등진 실항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산이 양산되어 왔다.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귀환 국군포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전 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우리 주민들을 납치하여 억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냉전과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생사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요망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분단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 이산의 고통을 겪는 일반이산가족과는 달리 2가지 차원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첫째, 이산 동기의 문제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다. 이러한 비자발성에 의한 억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중대한 인권사안으로서 국제인도법 상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의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납치와 억류라는 비인도적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확한 실상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전쟁 시기 및 전쟁 이후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2·13 합의를 계기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가운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합의,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전시납북자 문제의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내 정착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생사확인, 상봉, 송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국군포로와 납북자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태도를 분석한 다음 남북 당국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제4장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는 바,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나타난 구체적인 쟁점 중심으로 해결방향 및 세부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국군포로·납북자 실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국제인권장전에 입각하여 볼 때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어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성안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강제실종의 정의)에서는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사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고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납북자들은 유엔강제실종 협약의 적용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장전에서 볼 때 납북자는 일반 이산가족(월남 실향민)들과는 달리 자기 의사에 반해 끌려가서 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피해자이다. 그리고 입북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여기서 ‘억류’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북한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납북 어민의 경우에 특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납북 어민의 경우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북한의 영해를 침입했다 하더라도 북측에 의한 나포행위까지는 정당하나 선의가 확인되면 당연히 석방,

송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납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¹ 그리고 국군포로는 군인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공적 임무 수행’ 중 적의 ‘포로’가 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유엔 국제인권장전에서 보장되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1. 국군포로 실태

한국전쟁 종전 당시 포로송환이 이루어졌지만 포로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조창호 소위가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 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 신고 및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에서 귀환하지 못한 대상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다.

<표 II-1> 국군포로 현황

총 인원	포로교환	전사처리	실종자
41,971	8,726	13,836	19,409

¹- 신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12.19).

²- 통일부, 『통일백서 2007』 (서울: 통일부, 2007), p. 128.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탈북자와 귀환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총 1,77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중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II-2> 국군포로 생사확인 결과

총 인원	생존	사망	행방불명
1,770	560	910	300

출처: 국가정보원(탈북자·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작성),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자 코너,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7.8.3).

한국전쟁 종전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국군포로들은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2007년 4월말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69명이고 생존 55명, 사망 13명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와 함께 입국한 동반 가족은 137명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군포로 40명, 동반 가족 92명이 입국하였다. 국군포로의 귀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국군포로들이 억류될 당시 최소 20세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귀환 국군포로는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점차 북한 내 생존자 비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귀환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표 II-3> 국군포로 귀환 내역

연도	94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계
포로	1	1	3	3	9	6	6	5	14	11	7	3	69
가족	-	2	5	8	9	12	9	10	34	18	30	-	137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납북자 코너,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7.8.3).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국군포로들은 전쟁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정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남북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다. 이는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³

2.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실태

북한 당국에 의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납북되는 비인도적 행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6·25 전쟁 시기 북한 당국에 의해 대규모 납치 행위가 자행되었다. 둘째,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 행위가 저질러졌다. 전시 납북자는 전쟁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규모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 중 귀환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³-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않고 있다. 전시 납북자 실태 및 생사확인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납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발생한 납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어선을 타고 조업하다가 기관고장이나 실수로 인하여 NLL을 월선하거나 공해상에서 조업 중 북측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경우이다. 북측은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이 ‘자진월북’ 했거나 ‘간첩행위자’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송환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납북어부는 1955년 5월 28일 『대성호』 10명을 시작으로 3,696명이며, 그 중 3,268명이 귀환했고, 428명이 현재까지 억류중이다.

두 번째 유형은 비행기 납치 사건이다. 1969년 승객과 승무원 50명을 태운 KAL기가 공중에서 납치되었다가 11명이 북측에 억류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해군이나 해경 선박의 납치로서, 우리 어선 보호 활동 중에 북측의 기습공격을 받고 납북된 경우이다. 1970년 연평도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보호를 위한 방송 활동 중 I-2정이 납북되었는데, 북측은 비무장 방송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간첩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거부하였다. 1974년 어로보호한계선 경비중 북한함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해경 863호의 승무원 중 2명이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 북측의 비디오테이프 공개로 확인되었으나 북측은 송환을 거부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국내로 진입한 간첩에 의해 고교생들이 납치된 것이다. 1977년 8월 전남 흥도에서 납치된 이민교(18세), 최승민(17세) 그리고 1978년 8월 10일 역시 흥도에서 납치된 이명우(17세), 홍진표(17세), 1978년 8월 15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치된 김영남(16세) 등의 신상이 밝혀져 있다.

마지막 유형은 해외체류 혹은 해외여행 중 납북된 것이다. 현재까지

총 20명이 해외에서 납북되었다가 8명은 탈출하였고 12명은 북측에 억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 4월 5일 서독에서 납치된 유성근씨 일가족 4명, 1978년 4월 13일 노르웨이에서 고상문, 1987년 7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이재환, 1995년 7월 9일 중국에서 납치된 안승운 목사와 1999년 9월 7일 중국 단둥에서 납치된 무역업자 장세철, 끝으로 지난 2000년 1월 16일 중국 연길에서 납치된 김동식 목사 등이 있다.⁴

정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5명이고, 이들 납북자중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5명(87%)이 귀환했으며,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5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480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에는 1997년 최○○·강○○ 납파간첩사건 조사과정에서 1970년 말 북한 납파간첩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밝혀진 당시 고교생 5명도 포함되어 있다.

<표 II-4> 납북 및 억류자 현황

구 분	계	어 부	KAL기	I-2정	해경 863함	기 타	
						국내	해외
납 북	3,795	3,696	50	21	2	6	20
귀 환	3,315	3,268	39	21	2	-	8
억 류	480	428	11	21	2	6	12

4-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12.1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64~268.

<표 II-5>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1955	10	10	1973	8	392
1957	2	12	1974	30	422
1958	23	35	1975	31	453
1964	16	51	1977	3	456
1965	19	70	1978	4	460
1966	4	74	1980	1	461
1967	42	116	1985	3	464
1968	127	243	1987	13	477
1969	19	262	1995	1	478
1970	36	298	1999	1	479
1971	20	318	2000	1	480
1972	66	384			

<표 II-6> 귀환 납북자 현황

성명(나이)	생년월일	납북일자	직 업	탈북일자	귀환일자
이재근(68세)	1938. 9. 6	1970. 4.29	봉산22호 선원	1998. 8.30	2000. 7.23
진정팔(66세)	1940.12.14	1967. 4.12	천대11호 선원	2001. 9. 3	2001.10.30
김병도(53세)	1953. 1.10	1973.11.24	대영호 기관장	2003. 4.21	2003. 6.23
고명섭(62세)	1944. 7.27	1975. 8.17	천왕호 선원	2005. 3.23	2005. 7.12
최욱일(67세)	1940. 6.20	1975. 8.17	천왕호 선원	2006.12.26	2007. 1.16

*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탈출한 납북자 현황임.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억류하는 대상자는 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귀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청소년이나 청년 계층에게 대학 진학 기회 등을 부여하여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북한 지역이 고향인 실향민 출신이거나 가족 연고자가 있는 월남자 가족일 경우이다. 셋째, 정보획득 수단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중요한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넷째, 한국과 국제사회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송환요구가 미미할 경우이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납북 당시 연령은 평균 31세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평균 68세이며, 이들의 평균 납북 기간은 36년으로 북한주민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이들의 북한 내 생존 확률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다.⁵

⁵-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추진 현황

1. 정부의 기본입장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정부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라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통하여 국군포로의 귀환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소위가 최초로 귀환하였을 당시 국군포로 귀환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군포로의 귀환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법률상으로 명시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책무로서 해결할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둘째,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셋째,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넷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가는 위에서 규정한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 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에서 제3

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07년 4월 2일 귀환납북자 재정착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393호, 2007.4.27 공포)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가 한 단계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 해결과 이산가족을 통한 부분적 해결방식을 병행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생사·주소 확인→서신 교환→송환 등 단계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시 일정한 비율을 배려함으로써 생사확인 및 상봉을 지속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적 책무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우선 가족간 생사확인 및 상봉에 주력하고 궁극적으로 송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국 간 대화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여 오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분류하여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근원적인 해결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실현하여 왔다.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15차례 실시된 남북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9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의뢰하였으며, 13명 생존확인, 11명 사망확인, 67명 확인불가, 11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국군포로 관련 19가족, 75명이 상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래 15차례 실시된 남북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전후납북억류자 9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15명 생존 확인, 19명 사망확인, 53명 확인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생존자 15명 중 14명이 남측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상봉행사에 16가족 73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표 III-1〉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확인 및 상봉 현황

구 분	신청 건수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가족수
전후납북자	83	87	15	19	53	14	16가족(73명)
국군포로	84	91	13	11	67	11	19가족(75명)
합 계	167	178	28	30	120	25	35가족(148명)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 납북자1명, 국군포로 1명 거동불편으로 상봉 불가, 국군포로 1명 생존소식만 접수함.

** 신청건수, 생사확인 의뢰수가 다른 것은 추가확인 및 기타확인에 기인함.

2. 북한의 태도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오고 있다.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북한 내에는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석방한 반공포로야말로 억류포로라는 주장을 펴왔다.

남북협상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한 해결방식을 수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첫째, 북측은 친척이 북측에 살고 있는 경우 단호하게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2번 이상 피랍되거나 피랍과정에서 북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가려고 시도하다가 총·포격을 받은 경우는 간첩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거부하였다.⁶

둘째, 해외에서 납북된 인사 중 일부는 북측에서 대남선전방송에 출연함으로써 납북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자신들이 자진 월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AI)는 49명의 정치범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 속에 납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남측 가족들에게 자진 월북하였다고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 동진호 선원 강희근과 제3차 상봉 시 남측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

⁶- 윤미량, “납북자 관련 남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KAL기 스튜어디스 성경희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거입북자’로 밝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내간첩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의 경우에도 납치 행위를 부인하고 ‘돌발입북’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인 납치자 메구미의 남편으로 밝혀진 김영남은 2006년 6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대결시대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 입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해 바닷가에서 나무쪽배를 탔다가 망망대해로 흘러 간 뒤 북측선박의 구조를 받아 북으로 가게 되었다고 입북과정을 설명하였다.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의 입장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재하는 남한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던 남측 방송 기자가 ‘납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현지 송출을 제한하고 일부 기자의 취재수첩을 빼앗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개최된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도 북한은 상봉 첫날인 3월 20일 오후 SBS·MBC 기자들이 신성호 선원 천문석씨 부부의 상봉 장면을 보도하면서 ‘납북’, ‘나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 송출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3월 21일 이들의 취재를 제한해 공동취재단이 한때 취재를 거부하였다. 결국 우리측 공동취재단이 3월 23일 남측 방송사들의 ‘납북’, ‘나포’ 단어 사용을 이유로 북측이 취재제한 조치를 취한 데 항의해 전원 철수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같이 북한이 ‘납북’, ‘나포’라는 비인도적 행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 납치자 학습 효과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일본인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오히려 북일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한 이후 ‘납북’에 대해 더욱 경색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납치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역설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납치’라는 비인도적 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정책 대신 남한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하여 국제적 압박을 회피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의 합의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7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행불자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갈 데 대한 문제 등을 추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는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⁷

다음으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반공포로 문제로 역공하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남측의 일부에서 《국군포로》를 문제로 삼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따진다면 정전협정 체결 당시 8만 3천여명이나 되는 인민군 군인들을 《반공포로》의 미명 하에 강제 석방시켜 남쪽지역에서 억류한 바로 그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사실상 정전협정을 반대한 남측은 당시 그 협정에 따라서 포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⁸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납북자 문제를 북한인권과 연계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7-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최성익 부위원장이 밝힌 “북남인도주의사업 추진방향,” 『조선신보』, 2006.7.10.

8- 위의 글.

I
II
III
IV
V

다. 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인권공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흠어진 가족, 친척이 산생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경위들을 외면하고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의 문제를 무작정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⁹

특히 남한 내 극우보수세력들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 남한에서의 친북 통일운동을 말살하고 6·15 통일시대를 대결시대로 복원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비난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은 납북이라는 비인도적 행태가 공개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이산가족들 속에서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과 상봉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남북회담을 통한 근원적 해결 추진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적십자실무접촉 등 남북협상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남북간 신뢰를 기반으로 명분보다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⁹- 위의 글.

¹⁰- 『조선신보』, 2006.9.8.

왔다. 장관급회담에서 원칙을 도출하고 지원하되,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간다는 접근방식을 취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 합의 도출과정에서 국군포로, 납북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6·15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2000.6.27~6.30)에서 우리는 “6.25 전쟁 시기 및 전쟁 이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측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측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회담이 필요 없다”고 반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2000.9.20~9.23)에서 우리는 국군포로·납북자를 “6.25 전쟁기간과 정전 이후 남측 주민이었던 사람들로서 현재 북측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본인의 의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6~9.8)에서 북한이 먼저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선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1차적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를 통하여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제4차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가운데, 제8차 장관급회담(2002.10.22~10.25)에서 적십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제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항>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우리 정부는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전후 납북자 문제로 합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제1차 적십자실무접촉(2002.10.31~11.2)에서 우리는 전쟁시기 행불자의 범위를 “군인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전쟁 이후 행불자 문제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북측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2차 적십자실무접촉(2002.12.15~12.17)에서 우리는 “전쟁시기 등” 및 “전쟁 이후”로 표현하여 개념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반발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기 합의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2003.11.4~11.6)에서 우리는 동년 12월 중 전쟁 시기 행불자 300명의 명단을 전달할 것 등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별도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자고 별도의 해결방식에 반대하였다.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2005.8.23~8.25)에서 우리는 2가지 문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구체적으로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2,000명(국군포로 1,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시범 생사확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전후납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생사확인 대상은 군인, 민간인 구분 없이 ‘전쟁시기 행불자’로 한정하고, 일반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던 종래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별도의 해결방식과 전후 납북자 포함 2가지 제안 모두를 거절하였다.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2.21~2.23)에서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도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7차 적십자회담 합의서 제4항>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전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과정을 촉진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왔다. 먼저 제15차~제17차 장관급회담(2005.6~12)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2006.4.24)에서 납북자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당국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에서 제8차 적십자회담(2007.4.10~4.12)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핵심의제로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제20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항 ③호>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I-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북회담 전개과정

구분	남측 제의 내용	북측 반응
제1차 적십자회담(2000.6) 제2차 적십자회담(2000.9)	전쟁 후 행불자의 생사·주소 확인 등 재결합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의	“본인 의사에 반해 북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
제2차 장관급회담(2000.8)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해서 이산가족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의	동 문제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박근혜 대표 김정일 면담(2002.5)	전쟁시기 행불자 문제 해결 단초 마련	
제4차 적십자회담(2002.9)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주소확인에 합의	
제1차 적십자실무접촉(2002.11) 제2차 적십자실무접촉(2002.12)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방법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전쟁 후 납북자문제도 해결 촉구	전쟁시기 행불자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반응이나 전쟁 이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 고수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2003.12)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제8차~13차 장관급회담(2002.10~2004.2)	전쟁시기 및 이후 행불자들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과 서신교환 제의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면회소 착공식 이후 협의하자며 회피
제14차 장관급회담(2004.5)	전쟁시기 및 이후 행불자들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면회소 조기착공 건설 등 제도적 해결방안 촉구	제9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시 남측이 자신들을 걸고드는 행위를 한 바 있다고 회피
제15차 장관급회담(2005.6)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중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	

I
II
III
IV
V

구 분	남측 제의 내용	북측 반응
제6차 적십자회담 (2005.8)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제의	전쟁시기 행불자에 한정, 이산가족문제로 일반화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 * 전후 남북자 생사확인 문제는 논의자체를 거부
제16차 장관급회담(2005.9)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제17차 장관급회담(2005.12)	“2월 안으로 적십자 회담을 개최, 상호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한다”고 합의	
제7차 적십자회담 (2006.2)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다”(합의서 ④항)	
제18차 장관급회담(2006.4)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	
제20차 장관급회담 (2007.2)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	

출처: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전문가

설문 조사

1. 설문개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5월 관련 전문가 및 언론인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설문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동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동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동 문제가 남북회담 의제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 동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동 문제 논의를 위한 적정한 남북회담 단위, 대북협상시 ‘국군포로·납북자’의 적정한 호칭, 북측 태도 고려 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 구서독의 정치범 송환사례의 유용성, 우리당국의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북측의 태도 전망, 대북협상수단 및 북한호응 유도방안 관련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동 설문조사는 표본 크기가 120명에 불과하였고(통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300명 이상의 표본 규모가 필요), 응답율이 50%에 불과하였다(120명 중 61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41명이 전문가, 14명이 언론인이었다). 이러한 통계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결과

가. 인식 수준

<종합평가>

응답자들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데 대하여도 공감하였다. 그러나 동 사안의 해결을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에

두기 보다는 타 의제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해야 하는 의제로 보는 현실 주의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높은 인지도>

전반적으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0%(‘잘 알고 있다’ 4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로, 동 이슈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대다수는 국군포로·납북자의 실태에 대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들어 본 적 없다
답변자수	27(44%)	28(46%)	6(10%)	(0%)

<높은 중요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93%(‘아주 중요하다’ 31%, ‘어느 정도 중요하다’ 62%)로, 동 이슈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의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아주 중요하다	②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아주 중요하지 않다
답변자수	19(31%)	38(62%)	3(5%)	1(2%)	0(0%)



<다양한 우선순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3%만이 동 이슈를 남북회담의 의제에 있어서 1순위로 꼽았다. 그 밖에 2순위, 3순위, 4순위 등에 대해서도 골고루 응답하고 있고, 심지어 ‘비중 있는 순위가 될 필요 없다’는 응답도 10%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남북회담 의제가 매우 다양하고, 그 가운데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의제와의 조화 속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남북회담 의제 중 몇 번째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1순위	② 2순위	③ 3순위	④ 4순위	⑤ 비중있는 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	무응답
답변자수	8(13%)	18(29%)	18(29%)	10(16%)	6(10%)	1(2%)

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동 사안에 대한 정책적 비중 증대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도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접근태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보였다.

<단계적 접근 선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단계적 접근과 일괄타결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송환」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 71%가 동의한 반면, 일괄타결에 대하여는 21%만이 동의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송환」등 단계적으로 접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타당하다	② 일괄 타결지어야 한다	③ 기타	무응답
답변자수	43(71%)	13(21%)	4(7%)	1(1%)

<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대 수준>

송환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더라도 응답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북한 내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송환이 현실점에서 매우 어려운 것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수준이 ‘송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인데 반해, ‘생사확인과 상봉’이 36%, ‘자유로운 왕래’가 20%, ‘정례적 상봉’이 11%의 응답율을 보였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수준은 어느정도 입니까?					
문항	① 생사확인 과 상봉	② 정례적 상봉	③ 자유로운 왕래	④ 송환	⑤ 기타의견
답변자수	22(36%)	7(11%)	12(20%)	17(28%)	3(5%)

<다양한 회담채널>

남북 당사자 간 어떠한 협의 채널을 통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적십자회담’(34%), ‘별도기

I
II
III
IV
V

구’(25%), ‘장관급회담’(22%), ‘정상회담’(18%) 등 다양한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동 문제가 그 만큼 복잡한 이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아래와 같은 남북회담 단위 중 어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적십자회담	② 장관급회담	③ 정상회담	④ 별도기구	⑤ 남북협상에서 다룰 필요없음
답변자수	23(34%)	15(22%)	12(18%)	17(25%)	1(1%)

<용어의 문제>

북한은 국군포로·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명시적인 용어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여 남북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납북자, 국군포로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회적으로 사용할 경우 ‘납북’ 및 ‘억류’라는 이산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용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북한의 태도를 고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유사하게 우회적인 용어인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행방불명자’를 선호하는 응답(16%)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77%가 중립적인 용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를 그대로 사용자는 응답은 23%에 불과하였다.

대북협상시 ‘국군포로·납북자’의 호칭으로 적당한 표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②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행방불명자	③ 위 표현 그대로가 좋다
답변자수	37(61%)	10(16%)	14(23%)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해결 선호>

현재 정부는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광의의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성사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이산가족들내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178명의 생사확인 및 25명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측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현재의 이산가족 틀내에서 생사확인 및 상봉 규모 확대	② 이산가족과 별도로 해결추진	③ 기타
답변자수	33(54%)	24(39%)	4(7%)

<구서독의 사례 원용 지지>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 일본 학습효과를 고려할 때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구서독이 비공개 방식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이러한 사례를 원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 되어 왔다. 과거 서독이 취한 동서독 비밀협상 채널을 통한 ‘특별노력’

- I
- II
- III
- IV
- V

(비공개원칙 고수)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자들은 절대 다수인 72%(매우 그렇다 36%, 약간 그렇다 36%)가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서독의 경우 동서독 비밀협상 채널을 통한 “특별노력”(비공개원칙 고수)으로 비밀거래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 같은 구서독의 사례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답변자수	22(36%)	22(36%)	5(8%)	10(16%)	2(3%)

<북한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불 긍정적 평가>

대가지불방식에 대한 북측의 호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규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회담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에 북측이 호응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답변자수	18(29%)	4(7%)	39(64%)



해결방안

남북자 및 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수준, 접근방법, 정책적 우선순위가 현실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로드맵 차원에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남북 대결 상황에서 방치되어 온 인도주의 사안들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사회 내부에서 인도주의 사안을 재인식하고,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향후 5~10년 이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명분상의 과거사 정리 및 화해 차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¹¹ 또한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는 인도주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과의 조화 속에 현실적인 인식과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¹² 본 장에서는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본원칙

가. 국가적 책무

남북 간 체제 대결 상황에서 발생한 남북·역류문제는 당시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주요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완의 현안과제인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 정부도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이 국가적 책무라는 입장에서

¹¹ - 윤여상,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남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20.

¹² - 김용현,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남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27.

남북 간 회담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향후 동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적 책무 이행이라는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견지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적인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인도주의적 접근

현실적으로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양 사안이 인도적 문제로서 정치·경제 현안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주의 사안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생 및 미해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논의하기 보다는, 문제로 인해 당사자 및 가족들이 겪은 오랜 기간의 고통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한국전쟁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공공연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남북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 즉 동 사안은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¹⁴

또한 분단의 장기화와 문제 미해결로 인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¹³ 허신열,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13.

¹⁴ 강태호,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27.

에 없다. 대다수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북한 억류 중 결혼을 통하여 가족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만 송환할 경우 새로운 이산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족들 간의 자유 왕래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체제 대결과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가족들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¹⁵

다. 실질적인 협의의 다양화 및 국내합의 기반의 구축

납북자는 강제납치 이후 북한에 불법 억류된 사람들로 ‘즉각 원상회복’(송환)해야 한다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로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근원적 해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동 사안들은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나, 북한의 태도로 인해 남북 당국 간 협상과정에서 ‘국군포로’, ‘납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납북’ 여부를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계속할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납북자

¹⁵- 강태호, 위의 글.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납북’, ‘국군포로’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당국 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 지속적 관심 및 역할 분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비극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하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남북당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여론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NGO)들이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가족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상은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가족단체들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납북자 가족,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인권기구,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NGO들의 국제연대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논리 개발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법학자, 인권법학자, 정부 실무자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I
II
III
IV
V

2. 세부방안

가. 실태 파악

남북 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5명의 고교생의 경우 간첩이 자수하거나 검거되어 진술하기 전까지 납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탈북·귀환한 김병도씨의 경우 당시 정부가 발표한 486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병도씨가 탕던 대영호는 7명 정도가 승선한 작은 어선으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북측 해안에서 북측 경비정에 나포되었으나 가족도 단순한 해난 사고로 인식하여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나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납북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납북자 가족들은 귀환납북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부가 발표한 납북자 이외에 추가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4년에 납북된 것으로 명단에 수록된 수원 32호의 경우, 수원 33호와 함께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측 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다. 수원 33호는 북측에 나포되어 끌려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침몰된 수원 32호 선원들의 생사나 납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 우리 측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해본 결과 수원 32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확인불가’라고 회보되고 있어 모두 당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⁷

이상에서 보듯이 납북자 실태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북억류자 및 생존 국군 포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¹⁶- 제성호, “납북자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12.19).

¹⁷-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한다.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납북자와 사망 국군포로·납북자의 전체 규모, 이들의 북한 내 가족구성 현황, 북한생활 국군포로·납북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희망 및 요구사항, 그리고 한국 내 가족들의 요구 및 희망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제공되어야 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관련 부처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해나가야 한다.¹⁸

먼저, 귀환 국군포로·납북자 및 귀환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밀한 미귀환 국군포로·납북자 신상 자료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적십자 회담 및 군사회담 시 미귀환 국군포로·납북자 생존 실태조사를 북측에 협조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측이 주장하는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납북자는 분명한 송환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적 명분과 함께 북한에 생활하고 있는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협상채널 및 방식

<협상 채널 형성>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자발적인 실향에 의한 일반 이산가족과는 달리 자의에 어긋나는 납치와 억류라는 비인도적 성격의 사안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이산가족과는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는 이미 남북 사이에 ‘전쟁 시기’,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 문제를 전담

¹⁸ -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문제는 명백히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분단으로 불가피하게 저질러진 불행한 과거 역사를 책임소재 규명보다는 실질적인 화해와 용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¹⁹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다룰 경우 일본의 선행합속 효과로 인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적십자회담에서 직접적인 용어사용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듯이 정상회담에서도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포괄적으로 언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되 별도의 채널을 확보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첫째, 전쟁시기와 전쟁이후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사 사이에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채널로 적십자회담이 있기는 하지만 납북자 문제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 등을 감안하면 적십자사에 해결을 맡기기 보다는 납북자 문제를 다룰 별도의 대화채널을 형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²⁰ 실제 별도의 대화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설득력을 얻

¹⁹ - 임을출,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13.

²⁰ - 장용훈,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27.

고 있는 방안은 과거 통일 이전 서독이 동독에 억류 중인 정치범을 석방하는 데 사용한 방식이다. 동독 측이 정치범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였지만 표면에는 디아코닉 재단과 같은 민간단체가 나섰던 선례가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 사이에 비공개 협상을 통하여 해결에 합의하고 별도의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이산가족 해결 방식 병행>

이상에서 설명하였듯이 기본적으로 별도의 협상 채널을 통하여 생사확인, 상봉, 송환을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근원적 해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별도의 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광의의 이산가족 틀 내에서 생사확인과 상봉을 성사시키는 기존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과 상봉 시 특별 할당 비율을 현행 5%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¹ 물론 이산가족 상봉 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특별 배려를 확대할 경우에도 북측이 ‘확인 불가’ 통보로 대응하고 상봉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²²

²¹- 윤여상, 토론회 발제문; 허신열, 앞의 글; 김용현, 앞의 글.

²²- 하태원,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13.

I
II
III
IV
V

다. 보상 및 상호주의를 통한 해결

<비공개,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해결>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 송환을 위한 비밀협상을 실시하여 동독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동독 정치범을 서독으로 안전하게 송환하였다. 1963년부터 서독 정부는 정치범 석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989년까지 서독정부는 동독 정부에게 총 35억 마르크를 지불하여 약 3만 4천 명 정도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추방케 했다. 이와 같이 서독정부는 동독의 반체제 인사를 구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보상을 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적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비공개적 협상과 대가제공, 송환이후 정치적 논쟁 지양에 대한 합의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공개와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경우 국내적 합의, 언론과 가족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정상회담 대북송금 문제에서 보듯이 비공개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가족들이 이러한 비공개 방식에 대해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납북자 관련 단체들이 비공개 방식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국내적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사례와 국군포로·납북자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대규모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해결 노력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 대응 태도를 감안하여 볼 때,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으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양 사안을 경제적 흥정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방식에 의한 해결>

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북측이 요구하는 인도주의 사안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북측이 요구한 전향 장기수 중 북송 희망자와 2000년 9월 기 송환 비전향장기수 가족의 추가 송환을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9월 무조건적인 비전향장기수 송환과는 달리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하되, 국내적인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주의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비동시성과 비등가성을 인정하는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통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²³ 물론 남북적십자 공동면담위원회를 구성하여 납북자와 남측 전향장기수를 면담하여 자유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²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송환으로만 상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복합적인 문제점이

²³- 제성호, “납북자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

²⁴- 이병용,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6.27.

제기될 것이나, 정례적 상봉 및 서신교환 등을 포함하여 해결방안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송금 허용 추진>

정부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존 실태를 토대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북측 가족 중 북한거주 희망자에 대한 공식 송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 억류 국군포로 중 북한 내 가족관계의 형성으로 북한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잔여 급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 하에 현재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측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억류 납북자 중 북한 내 가족관계의 형성으로 북한거주를 희망할 경우 남한 잔여 가족들의 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라. 상봉, 자유왕래, 송환 방안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서 남측 가족의 소식과 우리 정부의 송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선택이 가족의 이별을 조장하거나 신가족과 구가족의 무게를 비교하도록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 사안의 발생원인과 책임성 차원에서 송환이라는 당위적 목표에 대한 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왔으나, 그와 함께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선택 문제로서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²⁵-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측이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 후, 당사자와 그 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거주지역을 선택하여 가족의 해체와 이별을 방지하고, 남북한 전체 가족의 왕래를 보장하며, 송금과 경제적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남북 간 인적교류 제도 상으로 자유로운 수시 왕래를 규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면회소의 활용>

납북자 및 국군포로 대부분이 남북한 양쪽에 모두 가족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송환 보다는 가족과의 자유로운 상봉 및 방문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면회소가 준공되어 운영되는 경우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정례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북측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강산 보다 접근이 용이한 개성 등에 제2의 면회소 건설을 지원하여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 방문 시 일반이산가족과 차별화되는 재정적·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송환대책>

남북한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에 합의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송환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자발적 의사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노령자(노동 불가 북측 해당자) 우선 원칙에 기초한 가족 통합

I
II
III
IV
V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송환대상자 선정 시 국제적십자를 개입시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하자고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레짐의 개입 허용으로 재결합 또는 송환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고, 북한당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제적인 대북인권압력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송환 절차는 국제적십자와 남북한적십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자유왕래 및 유해송환의 문제>

대부분 북한 내에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송환으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자유방문(국군포로·납북자의 남한가족 방문, 남한가족의 국군포로·납북자 방문)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자유방문의 경우 체류지원, 체류기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별도로 합의하도록 한다. 방문은 고향방문의 형식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서울, 평양 등을 상호 교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사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우리 측 가족이 희망할 경우 유해송환을 추진하되, 유해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시 지원>

현재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입국 시 제공되는 정착금과 별도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국내 입국이

후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이산으로 발생했던 심리적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1. 단행본

- 납북자가족협의회. 『(6·25 53주년)납북인사 송환 한일공동 촉구대회 : 북한의 민간인 납치 테러의 시작과 현재』. 서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3.
- 윤여상.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 월간조선사 편집부. 『6.25 납북자 82959명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서울: 월간조선사, 2003.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통일부. 『통일백서 2007』. 서울: 통일부, 2007.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2. 논문

- 강태호.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27일.
- 김용현.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27일.
- 신 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 _____.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02.
-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 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 이금순. “인권사안으로서의 납북자 문제.”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 윤여상.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4권 제1호, 2002.
- _____.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 _____.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2004.
- _____.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20일.
- 이병웅.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27일.
- 장용훈.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27일.
- 제성호. “납북자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 _____.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7권 1호, 2001.
- 하태원.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13일.
- 허신열.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년 6월 13일.

3. 기타자료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종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Studies Series

비매품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3

이 책은 친환경소재인 일레이션지(표지)와 이라이트지(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 수 암 (金壽岩)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공저(2006)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의 적용 실태」(2005)

■ 이 금 순 (李琴順)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공저(20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2005)

■ 최 진 옥 (崔鎭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정권과 한반도장래」(2005)

「현대북한행정론」(2002)

■ 서 은 성 (徐銀星)

통일연구원 연구위원